

남해군청 재무과-3461에 대한 답변입니다.

제 목	남해군청 재무과-3461에 대한 답변입니다.		
신청일	2024. 2. 5.		
민원인		연락처	
주 소			
공개여부	공개, 비공개	분 류	진정, 질의, 탄원,
진정내용(6하 원칙)			
<p>1. 남해군청 재무과-3461에 대한 답변입니다.</p> <p>2. 정말 말기를 못 알아 들으시는군요</p> <p>3. 위 지번 공유지의 길이단위는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. 문제제기한 것은 정확한 공인 측량기점이 없는데 어떻게 면적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. 위 지역은 측량 재조사구역이라 말 하면서 고정된 측량값이 있는 양 앞뒤가 안 맞는 변명으로 현실을 정당화 시키려 하십니까.</p> <p>4. 워킹미터줄자 및 위성지도시스템으로 타인의 훼손면적 산출은 가능한데 왜 군청은 자신들의 농지법 위반 및 무단훼손지역 및 면적산출은 지적재조사사업중이라 외면하고 회피하십니까. 4번 내용은 이미 민원제기한 상태인데 군청은 민원의 본질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뒷북치는 소리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.</p> <p>5. 농지 훼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. 콘크리트 포장은 괜찮고 옆 농지로 오르기 위한 단차재거를 위한 흙메움은 훼손입니까. 농사도 안짓는 공유지 가지고 너무 야박한거 아닙니까. 남해군청이 군민을 상대로 말입니다. 변상금 550원 받으려고 등기우편료 3~4번 쓰고, 군제정이 여유가 많으시군요. 변상금 통지서 발송하세요 납부할테니, 그게 군제정을 아끼는 거라 생각되어 내돈 쓰겠습니다. 등기 말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세요. 돈 아깝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2월 5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하석진(印)</p>			
남해군수 귀하			